

#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(안) 검토보고

(의안번호 제4호 2000. 3. 8)

총무위원회  
전문위원 성호영

## 1. 검토경과

- 가. 2000. 3. 8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0. 3. 8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0. 3. 1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## 2. 제안이유

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'99. 8. 31 공포된 지방자치법(제13조의4)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하기 위함

## 3. 주요골자

- 가.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 1이상으로 함(안 제2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·군은 도지사에게, 시·도는 주무장관에게 20세이상 주민 1/50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이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1/150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에 위반되지 않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임.